

동아리활동규정

제정 1996.12.26.

개정 2009.02.06.

개정 2012.02.01.

제1장 동아리 활동 지침

제1조(의의) 동아리 활동은 대학교육의 목표달성을 위한 과외활동의 하나로서 학생들의 개인적 흥미와 취미의 유사성 내지 동일한 목적을 바탕으로 한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집단적, 사회적 활동의 조직체이다.

제2조(목적) ① 학생의 자기 적성 발견의 기회로 여가 선용에 도움을 준다.

② 다양한 소질의 개발로 개인의 발전과 성장을 가져온다.

③ 타인과 협력 관계를 배워 사회성을 가져온다.

④ 기술과 능력을 연마함과 동시에 새로운 지식과 생활정보를 얻어 일반 교양을 향상시킨다.

제3조(내용) 각 동아리 설립 목적 및 취지에 따라 운영 방향을 정해야 한다.

① 프로그램의 계획은 학년초로 하되 1년의 계획안을 수립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월간, 주간 계획을 세운다.

② 계획 전에 회원의 요구와 흥미를 조사한다.

③ 동아리 자체의 목표와 동아리 상호간의 횡적관계를 고려한다.

④ 학교의 행사, 수업, 시설, 주위환경 조건과 예산을 고려한다.

⑤ 프로그램 내용은 가능한 구체적인 행동 항목으로 명시한다.

⑥ 활동 후 또는 정기적으로 실행한 활동을 반성, 평가하여 조직의 활동과 내용을 발전시킨다.

제2장 권리와 책임

제4조(권리) ① 대학에서 허가 혹은 가설치한 매개체를 통한 개인 및 집단의 견해를 발표할 수 있다.

② 대학교육의 목적에 부합된 단체 및 사업에 참여 할 수 있다.

③ 보다 원활한 동아리 활동의 전개에 필요한 학교의 인준과 보호 및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동아리 활동의 효과를 증진시키며 학생들의 보다 효과적인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대화

에 참여할 수 있다.

제5조(책임) ① 교육적인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활동을 자주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해야 한다.

② 동아리 활동에 있어서 제반 행동이나 의사 표현은 대학생활을 대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모든 학생들의 복리에 봉사하며, 대학의 가장 고귀한 목적 달성에 이바지 하는 행동이나 의사표현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어떤 특수집단이나 개인이 편견이나 또는 협소한 목적의식에서 전체 대학의 조화된 복지에 방해되는 행동을 피하여야 한다.

④ 외부단체나 기관 혹은 타 대학 학생들간의 연합 또는 제휴의 경우에 학교의 사전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장 조직

제6조(동아리 조직) 동아리를 조직할 때는 아래와 같다.

① 동아리의 조직목적은 학술연구, 체육, 봉사활동, 종교활동, 예능에 한하고 그 구성 요원은 본 대학 재학생으로서 5개학과 이상 학생의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인원은 최소한 30명 이상으로 한다.

② 매 학년초 30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구비,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동아리 등록 신청서(소정양식)
2. 활동계획서(소정양식)
3. 회원명부(소정양식)
4. 서약서(소정양식)
5. 회칙
6. 지도교수 취임 승낙서(소정양식)
7. 동아리 등록 확인서(소정양식)
8. 동아리 소개서(소정양식)
9. 전년도 활동 실적서(소정양식)

③ 동아리를 조직, 등록할 시에는 반드시 1인 이상 본 대학의 교수중에서 지도교수를 선임하여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 3개월의 유예기간을 가질 수 있다.

④ 동아리의 장이 되고자 할 때에는 회원이 호선한 자로 성적이 평균평점 C⁰(2.0)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징계 처분을 받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⑤ 각 동아리간의 활동을 원활히 하고 상호간의 정보를 교환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 학생회 산하에 둘 수 있다.

⑥ 건전한 동아리를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회비 또는 학교에서 필요시 일부의 경비를 지도교수 활동비로 지원할 수 있다.

⑦ 동아리의 회칙 및 기타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동아리) 승인된 동아리는 매학기 1회 이상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양강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활동) ① 각 동아리의 장은 행사 5일전까지 행사계획서를 제출하여 학사운영처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각 동아리 활동에 관하여는 사전에 지도교수에게 보고 협의 하여야 한다.

제9조(활동금지) 총장의 승인을 득하지 못한 동아리의 구성과 활동은 일체금지 한다.

제4장 집회.인쇄물 게시광고

제10조(허가 및 보고) 집회허가 및 결과보고, 인쇄물 제조 및 배포, 광고 및 게시물은 학생회칙 및 제반규정에 따른다.

제11조(집회) 각 동아리는 월 1회 이상 매 학기당 4회 이상 활동을 가져야 다음 학년도의 등록을 인정한다.

제5장 지도교수의 권리 및 의무

제12조(권리) ① 지도교수는 필요에 따라서 동아리를 임의 소집할 수 있으며 지도교수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지도교수는 동아리의 활동이 미온적이거나, 목적에 위배될 시에는 수정을 가할 수 있으며, 이를 수락치 않을 때에는 임원단 재선거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지도교수는 동아리의 활동시 활동의 목적이 학생신분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때는 활동을 거부할 수 있으며, 집회도중이라 하더라도 해산을 명할 수 있다.

④ 회원중 학생신분에 어긋난 행동을 하거나 활동에 해를 끼치는 학생에 대해서 제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지도교수는 동아리 회원중 모범이 되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포상 대상에 추천할 수 있다.

제13조(의무) ① 지도교수는 회원의 활동을 허가 하였을 때에는 모임에 참석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대리 지도교수를 선정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도교수는 회원이 학생신분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올바른 집단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지도 격려 하여야 한다.

③ 지도교수는 동아리의 모든 계획 및 집행여부를 감독하고 점검해야 한다.

제6장 동아리 활동 지도위원회

제14조(구성 및 소집) 본 위원회의 위원은 각 동아리 지도교수 및 학사운영처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사운영처장이 되고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제15조(회의) 위원장은 년 2회 이상 지도위원회를 소집하며 당해 학기의 지도 방향과 전 학기 활동실적을 심의 할 수 있다.

제16조(대표회의)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동아리 대표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장 상벌관계

제17조(포상) 다음 각항에 해당되는 동아리 및 지도위원에 대하여 총장 명의로 포상할 수 있다.

- ① 학교발전에 공이 크다고 인정될 때
- ② 선행이 뚜렷하여 타의 모범이 될 때
- ③ 기타 포상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18조(처벌) 다음 각항에 해당될 때에는 지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 ① 차기 집회 중지
 - 1. 집회 결과 보고서 미 제출시
- ② 한 학기간 활동 중지(아래 각호에 해당될 때)
 - 1. 불법 집회시
 - 2. 인쇄물 불법제조 및 배포시
 - 3. 불법광고 게시
 - 4. 활동실적이 부진할 시
 - 5. 학생신분이 아닌 자가 교내에서 동아리활동을 할시
- ③ 해체 및 관련 임원 처벌(아래 각호에 해당될 때)
 - 1. 전 항에 해당되는 일이 2회 이상일 때
 - 2. 불법집회, 인쇄물 불법제조 및 배포를 동시에 할 때
 - 3. 불온광고 및 게시행위
 - 4. 목적외 활동시
 - 5. 학생회칙 위배, 대학 및 동아리의 명예 훼손시, 등록서류에 부정이 있을 시, 제11조, 제24조 위반 시

제19조(감별) 처벌기간중인 동아리(학생)이라도 정상에 따라 감별할 수 있다.

제8장 동아리방 배정

제20조(배정) 동아리방은 제6조 2항에 의거 등록을 필하고 학교의 승인과 배정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사용기간) 동아리방의 사용 시간은 학교의 시설물 관리지침에 따르며 통상 08:00부터 22:00로 한다. 단, 행사기간 중에는 학사운영처에 사용 목적을 알린 후 허가를 득하여 연장 사용할 수 있다.

제22조(준수사항) ① 실내 및 그 주변은 항상 청결, 정리 정돈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험한 물건이나 불법선전물 등의 보관, 부착을 금지한다.

③ 실내에서 고성방가, 불건전한 오락이나 풍기문란 행위를 금지한다.

④ 학교, 교수 또는 시설물 관리자의 점검에 복종하여야 한다.

⑤ 동아리 방에서는 취침행위, 취사행위, 전열기구 등의 사용을 금한다.

제23조(폐쇄) 위 각조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해당 동아리의 방 사용을 중단하거나 폐쇄할 수 있다.

제24조(기타)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나, 개정시 동아리 활동 지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학생지도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25조(서식) 동아리활동에 관한 각종서식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규정은 1996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동아리 (신규.재) 등록 신청서

동아리명칭				<input type="checkbox"/> 일반동아리	<input type="checkbox"/> 전공동아리
				<input type="checkbox"/> 창업동아리	<input type="checkbox"/> 기타
회 장	성명	과 학년, 학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 폰		
			자택		
주소					
설립년월일					
회 원 수		총인원 명 (남: 여:)			
회장단 사진	회 장	부 회 장	총 무		
	3× 4사진	3× 4사진	3× 4사진		

- 첨부: 1. 동아리 등록 신청서(소정양식) 1부.
2. 동아리 활동 계획서(소정양식) 1부.
3. 동아리 회원 명부(소정양식) 1부.
4. 서약서(소정양식) 1부.
5. 동아리 회칙1부.
6. 동아리 지도교수 취임 승낙서(소정양식) 1부.
7. 동아리 소개서(소정양식) 1부.
8. 동아리 전년도 활동 실적서(소정양식) 1부.

위와 같이 동아리 등록을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순천제일대학교 총학생회장 귀중

순천제일대학교 총장 귀중

동아리 회원 명부

□ 동아리명 :

□ 제출일자: 20 년 월 일

번호	직책	학과	학년	학번	성명	주소	연락처

동아리 활동 계획서

□ 동아리명 :

□ 20 년도 학기

월/일	사업명	실시 장소	참가 인원	예산액	비고
/					
/					
/					
/					
/					
/					
/					
/					
/					
/					
/					
/					
/					
/					
/					

20 년 월 일

동아리 회장: (인)

지도교수: (인)

순천제일대학교 총학생회장 귀중

순천제일대학교 총장 귀중

동아리 소개서

□ 동아리명 :

□ 회 장 :

□ 지도교수 :

동아리 소개 :

전년도 활동 실적서

□ 동아리명 :

□ 회 장 :

□ 지도교수 :

월/일	사 업 내 용	실시 장소	참가 인원	결 산 액	비 고
				지원금/자체예산액	

※ 팸플렛, 활동사진, 계획서등 자료 첨부